# 총여학생회 회칙

### 전 문

총신대학교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이웃과 세계를 위한 성실한 봉사자가 되라는 교육 방침 하에서 단순한 관념이나, 학문만을 위한 학문의 탐구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며 확실한 칼빈주의적 학문을 수립하며, 아울러 총신대학의 독특성을 살려 교회 및 사회에도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시점에서 총신의 여학생회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된 여성으로서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 방침에 입각하여 회원 각자의 참신하고도, 창조적인 제반 활동을 통해 지금껏 단순한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회원 각자의 보다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정립하고, 나아가서는 개혁을 바탕으로 한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소양을 배양하고 아울러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확장에 이바지할 초석의 기능을 감당할 방안으로 총신대학 총학생회 산하 총여학생회를 발족하고 회칙을 제정하는 바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총신대학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인류에에 기초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창조된 여성들이 현 구조의 보편성 만으로서는 흡수될 수 없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설립한 것으로, 신앙적이며 독자적인 제반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각자가 주체적인 여성상을 정립하고 아울러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확장에 이바지 할 초석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하며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집행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여성관의 배양과 확립을 위하여 총여학생회의 회원에 남자 집행부의 임명을 허용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항 본 회 회원은 본회와 본 회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총여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직) 본 회는 총여학생회장, 부 총여학생회장, 그리고 집행부로 조직된다.

### 제2장 여학생 총회

제6조 (구성) 여학생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7조 (권한)

제1항 여학생 총회는 본 회 회칙의 수정 및 전면 개폐의 권한을 가진다.

제2항 여학생 총회는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3항 여학생 총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4항 여학생 총회는 여학생 회장 및 부 여학생 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갖는다. (이 때 정·부총여학생 회장은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투표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투표 율은 60%이상이며 투표자 중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8조** (소집)

제1항 여학생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있어서, 총여학생회장의 재량 하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총회는 소집 3 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여학생 총회는 1/7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 시에는 회원 1/3 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 원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장) 여학생 총회의 의장은 여학생 회장이 된다.

# 제3장 확대 운영 위원회

제11조 (지위) 확대 운영 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의 기구이다.

제12조 (구성) 확대 운영 위원회는 본 회 운영 위원과 여학생 대표 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본 회의 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2항 여학생회장 및 부 여학생회장의 탄핵 발의권. (탄핵은 확대 운영 위원 1/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제3항 총무 및 집행부 부장에 대한 탄핵 및 해임 의결권. (해임 의결은 재적 위원 2/3 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4항 특별 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권.

제14조 (소집) 확대 운영 위원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제1항 임시 총회는 확대 운영 위원 10 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여학생 회장 및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확대 운영 위원회의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한다. 단, 임시 총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의장) 확대 운영 위원회 의장은 확대 운영 위원 중 호선한다.

**제16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확대 운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4장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 **제17조** (지위)

제1항 총여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여학생회 집행부 의장이 된다.

제2항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운영 위원이 된다.

제3항 부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여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직책을 대행한다.

#### 제18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본 회 회원의 제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2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본 회와 회원 전체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정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는 대의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3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집행부 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집행부를 소집, 그 업무를 주관한다.

제5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여학생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집행부 및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뒤 대의원총회 의장의 인준에 의해 행한다.

제7항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기타 총여학생회장의 집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집행한다.

제19조 (임기) 총여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2 월 1 일부터 다음 년도 11 월말까지로 한다. 단,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시 총여학생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진행되는 재투표 전까지 연장된다.

제20조 (선출) 총여학생회장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다.

# 제5장 운영 위원회

제21조 (지위) 운영 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22조 (구성) 운영 위원회는 여학생 회장, 부 여학생 회장, 여학생 대표 위원회, 총부, 각 집행부장으로 구성된다.

### 제23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본 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검토, 심의, 조정하여 확대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항 본 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확대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항 본 회의 결산 보고서를 검토, 심의 조정하여 확대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항 확대 운영 위원회의 소집과 여학생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항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제6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확대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항 업무 집행 안을 발의하여 확대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항 확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치 않는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 (소집)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제1항 정기회는 월 1 회로 한다. 단, 그 시기는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항 임시회는 여학생 회장 및 운영 위원 1/2 인 이상의 발의에 소집한다.

**제25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운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집행부

제26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27조** (구성 및 업무)

제1항 학기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된 총여학생회원 중 총여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2항 본 회의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를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제3항 각 부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 그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호 정책국: 본 회의 정책관련 업무와 여론수렴의 정책 반영 및 여학생 대표위원 관련업무 등의활동에 힘쓴다.

2호 재정국: 경리 및 본 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3호 영성국: 본 회가 담당해야 할 봉사 업무 및 본회의 제반 신앙 활동을 관장한다.

4호 교양국: 본회의 문화, 예술 및 그에 따른 행사와 본회의 홍보 업무를 관장하고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5호 복지국: 학내 여학생을 위한 제반 복지시설을 관장하며, 여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작업에 참가한다.

6호 홍보국: 본 회 활동의 홍보를 관장한다.

7호 대외협력국: 본 회가 담당하는 사업에 있어 학교 대외적 업체,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

8호 서기국: 본 회의 회의 진행사항 및 기타 공문서 작성을 관리한다. 단, 그 명칭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필요시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부서를 가감 할 수 있다.

### 제7장 총여학생회

제28조 (구성) 총여학생회장의 재량 하에 학기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총여학생회 위원들은 본 교 전체 여학생들의 복지와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총여학생회 위원들은 본 교 전체 여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학생들과의 모임을 갖는다.

### 제8장 재정

제30조 (경비)

제1항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학생경비)와 그 이자, 지원금으로 한다.

제2항 재정 관리는 재정부에서 담당하되 집행은 여학생 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제31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 월 1 일부터 다음 년도 11 월말까지의 1 년으로 한다. (총학생회의 임기와 동일)

**제32조** (예산편성 및 심의) 학생회비 징수는 학교 당국에 위임한다. 예산은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뒤 대의원총회 의장의 인준에 의해 행한다.

#### 제9장 선거

### **제33조** (선거 시기)

제1항 총여학생회장단의 선거는 총선거 기간에 실시한다.

제2항 그 외 총여학생회 위원들은 학기 중 공개 모집한다.

제34조 (선거 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총여학생회장과 부 총여학생회장은 전체 여학우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며, 유권자 60% 투표율에 60%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경선일 때는 60% 투표율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5조 (여학생 회장과 부 여학생 회장의 선거) 여학생 회장과 부 여학생 회장 입후보자는 2 인 1 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하나로서 참여한다.

제36조 (임기) 총여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로 구성된다.

제2항 선거 관리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제3항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 **제38조** (보궐선거)

제1항 총여학생회장과 부 총여학생회장이 동시 궐위 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 한다.

제2항 총여학생회장의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50 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 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 총여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확대 운영 위원회 의장이 권위 시 잔임 기간에 상관없이 호선한다.

제39조 (선거권)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제40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항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 2.5 이상인 자.

제2항 본 회 회원 5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41조 (선거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선거 관리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42조 (선거 시행세칙) 기타 선거 절차 및 선거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장 비상특별위원회

제43조 (직위) 비상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임시적인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44조** (구성)

- 제1항 비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 총여학생회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비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된다.
- 제2항 비상특별위원회의 집행부는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또는 집행부장으로 구성된다.

**제45조** (임기) 비상특별위원회와 비상특별위원장은 본회가 구성된 다음 학기, 새로운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되고 활동한다.

### **제46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비상특별위원회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부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제2항 비상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한다.

제3항 비상특별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 시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제4항 비상특별위원회는 제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호 사무국: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며, 행정 및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2호 정책국: 대·내외적인 정책을 집행하며, 총학생회 이하 기관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한다.

3호 홍보국: 대·내외적인 홍보를 기획, 담당한다.

4호 재정국: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5호 영성국: 각종 예배와 선교에 관한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제5항 단 전항 이외의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의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항 비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계획안, 사업보고서, 예산편성과 사업 평가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장 회칙 개정

제47조 (발의 및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1/20 이상의 발의나 총여학생회장의 발의, 집행부 1/2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0 일 이내의 공고 기간 동안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한다. 개정 된 회칙은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12장 부칙

제48조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